

“뉴질랜드산 생녹용, 이름표 달겠다”

- 뉴질랜드양록산업위, 뉴산녹용에 원산지 표시키로 약속 -

“뉴질랜드산 전지 녹용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국가 표식을 실시하겠다”

국내산 생녹용으로 둔갑, 국내 농가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뉴질랜드산 생녹용에 앞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표식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3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 미팅룸에서 뉴질랜드양록산업회(뉴질랜드 양록인 생산자단체) MJ로자 사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같은 약속을 받아냈다.

본회 김회장은 “원료의 약품으로 수입되고 있는 뉴질랜드산 생녹용이 몇 차례의 불법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국내산 생녹용으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어 국내 농가에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히고 “수입되는 뉴질랜드산 생녹용에 낙인 등의 방법으로 국가 표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회장은 “본회가 경찰청 외사과, 서울세관 등과 불법 생녹용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불분명해 수사 진척에 어려움이 많다”며 “뉴질랜드산 녹용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뉴측 양록인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양록산업회 MJ로자 사장은 “우리도 뉴질랜드산 녹용이 뉴질랜드산으로 판매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뉴산 녹용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국가 표식을 실시도록 하겠다”고 본회측 의사를 수용했다.

다만 MJ로자 사장은 양국 생산자단체의 협의에 의한 시행보다는 양국 정부가 주도하는 편이 업무의 확실성과 효율성이 높음으로 양국 정부의 주도하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로자 사장이 제안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본회가 한국 식약청에 양국 생산자 협의 사항 통보 → 한국 식약청, 뉴질랜드 농무성에 협의 사항 통보 → 뉴질랜드 농무성, 뉴질랜드양록산업위원회에 의견 질의 → 뉴질랜드산업위원회 녹용 외관 표식 승인 → 녹용에 국가 표식 후 한국 수출.

이에 따라 본회는 한국 식약청에 양국 생산자단체가 협의한 사항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공문참조)

본회는 지난 해에도 뉴질랜드측에 녹용 외관에 국가 표식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국내 수입업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뉴측이 거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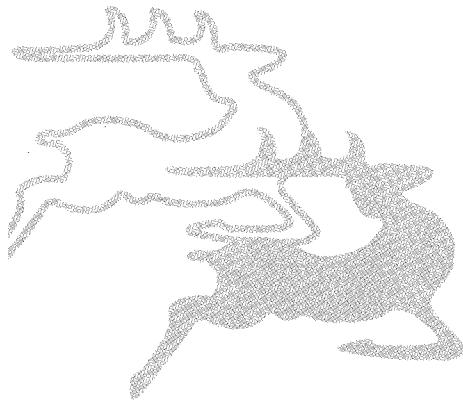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뉴질랜드에서 개최하는 제2회 국제녹용과학심포지움에 관한 양국 협조 사항, 특소세 현행 유지에 관련된 사항 등이 논의됐다.

▣ 본회가 식약청에 발송한 공문 내용

수 신 : 식약청장

참 조 : 의약품관리과장

제 목 : 뉴질랜드산 전지녹용 국가표식 실시 건의



1.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2월11일 본회는 뉴질랜드양록 산업 회 (Deer Industry Newzealand) MJ로자(Michael-John Loza 사장(CEO)) 사장과의 면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3. 이 자리에서 뉴질랜드산 녹용의 위변조를 방지키 위해 전지녹용 수입시 녹용 외관에 표식을 실시키로 합의하였사오니,
4. 귀청에서는 뉴질랜드 농림부 등 녹용 수출 관련 담당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합의사항 주요 요지

면담일시 : 2003년 12월11일 15시
장 소 : 코리아나호텔 미팅룸
참석자 : 본회 김수근 회장, 손성훈
과장, 한국양록개발원 성 락 대표, 뉴
질랜드양록산업 회(Deer Industry
Newzealand) Michael-John Loza 사장
(CEO), 뉴질랜드 대사관 신영균 상무
관

- 합의 내용

김수근 회장 : 원료의약품으로 수입
된 뉴질랜드 전지 생녹용이 불법으로
유출, 국내산 생녹용으로 둔갑되는 경
우가 적지 않아 국내 양록농가의 피해
가 막심한 상황이며 사슴만성소모성
질병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북미산
녹용이 제 3국을 경유, 원산지가 변조
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뉴
질랜드산 전지 생녹용에 위변조가 불

가능한 표식(낙인 등)을 해줄 것을 요청.

로자 사장 : 뉴질랜드산 녹용이 한
국, 혹은 다른 국가로 변조되는 것에
대해 깊은 동감을 느끼며 뉴질랜드 양
록인들도 뉴질랜드산 녹용이 뉴질랜
드산으로 유통되기를 강력히 희망하
고 있음. 이에 뉴질랜드산 전지녹용
수출시 뉴질랜드산임을 입증할 수 있
는 표식을 실시키로 동의함. 다만 양
국 생산자단체의 협의에 의한 시행보
다는 양국 정부가 주도하는 편이 업무
의 확실성과 효율성이 높음으로 양국
정부의 주도하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됨.

※ 로자사장이 제안한 표식 절차 : 한
국양록협회가 한국내 녹용수입 담당
기관에 합의사항 통보→한국 담당기
관, 뉴질랜드 농림부 등 녹용수출 담
당기관에 양국 생산자의 합의사항 통
보→뉴질랜드 담당기관, 뉴질랜드양록
산업위원회에 합의내용 승인여부 질
의→뉴질랜드산업위원회 녹용외관 표
식 승인→녹용에 국가 표식 후 한국
수출.

※ 표식 방법 : 전지녹용 상대부위에
낙인이나 식용 페인트 등 위변조가 불
가능한 방식으로 수출국 표시. [한국양록](#)